

감 사 위 원 회

주 의 요 구

제 목 건설공사 예정가격(모험놀이대A 설치비) 산정 부적정

관 계 기 관 종로구(공원녹지과)

내 용

종로구 공원녹지과(이하 ‘발주자’라 한다)에서는 ♡♡동 ○○번지 일대(♡♡근린공원)에 어린이들의 자연환경 체험장을 조성하고자 H기업과 공사계약(금373,878천원)을 체결하여 “♡♡공원 유아숲체험장 조성공사”를 ’16.9.5. 착공 및 ’16.12.3. 준공하였다.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40호, 2016.1.20)」 제2장 제5절 1-3(비목별 가격 결정의 원칙)에 따르면 원가계산을 통해 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료비, 노무비, 경비의 세비목과 그 물량(재료량, 노무량, 소요량)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,

조경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기준인 「조경공사 적산기준」(2010.2.18. ○○○○○ 협회 발행, 이하 ‘적산기준’이라 한다) 제15장(유희시설) 15-4-4(이음 및 접합과 설치)에 따르면 ‘목재의 가공 및 설치’ 품(노무량)은 사용 목재의 규격과 설치 난이도에 따라 각각 ‘보통구조’(3단계), ‘중등구조’(2단계), ‘상등구조’(1단계)의 총 6단계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.

[표 1] 목재 가공 및 설치 적용 품(조경공사 적산기준, m³당)

구 분		건축목공 (인)	보통인부 (인)	설치 난이도	목재 규격
보통구조	하	6.285	0.682	간단	통나무나 대각재, 후판 등이 대부분(80% 이상)으로 목재체적에 비해 <u>가공정도가 적은 구조</u>
	중	7.274	0.786	보통	
	상	8.760	0.958	복잡	
중등구조	보통	10.612	1.156	보통	대각재, 후판 등이 목재의 50% 이상을 차지하여 목재체적에 비해 <u>가공정도가 중간인 구조</u>
	상	13.767	1.497	복잡	
상등구조		16.975	1.848	-	소각재, 박판, 소폭판 등이 목재의 50% 이상으로 목재체적에 비해 <u>가공정도가 많은 구조</u>

따라서 발주자는 위 적산기준에 따라 가공 및 설치하고자 하는 목재의 종류가 통나무⁴⁾, 대각재⁵⁾, 후판⁶⁾ 등으로서 그 비율이 80% 이상(소각재, 박판 등이 20% 미만)인 경우에는 노무량 산정 시 ‘보통구조’의 품을 적용하고, 대각재, 후판 등의 비율이 50% 이상(소각재, 박판 등이 50% 미만)인 경우에는 ‘중등구조’의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.

그런데 발주자는 ♡♡공원 유아숲체험장 조성공사 내 유희시설인 ‘모험놀이대 A’를 목구조로 설계하면서 사용되는 목재의 종류가 통나무 19.066m³, 소각재 1.015m³, 박판 1.324m³으로 적산기준 상 ‘보통구조’에 해당하는 통나무의 비율이 전체 목재(총 21.405m³)의 89.1%(19.066m³)인데도, ‘보통구조’가 아닌 ‘중등구조’ 품을 적용하였다.

그 결과 모험놀이대A에 ‘보통구조 중’의 품을 적용시 설치비(공사비)는 132,710천원인데도, ‘중등구조 보통’에 해당하는 149,600천원으로 과다 산정한 결과 16,890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.

[표 2] 모험놀이대A 설치비 재산정 결과

(금액단위: 천원)

모험놀이대A 설치비(목재 가공 및 설치) 재산정 현황							비고
공종	규격	수량	단위	준공금액 (A)	재산정 금액(B)	증감액 (A-B)	
모험놀이대A	14,525*8,820	21.4	m³	149,600	132,710	16,890	과다 지급액

4) 통나무 : 전혀 제재하지 않은 원목

5) 대(大)각재 :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제재목을 ‘각재’라 하며, 각재의 두께가 7.5cm 이상인 경우 ‘대각재’라 함

6) 후(厚)판 :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이 되는 제재목을 ‘판재’라 하며, 판재의 두께가 3cm 이상인 경우 ‘후판’이라 함

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

이에 대해 발주자는 공사 예정가격 산정방법에 대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.

조치할 사항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

조경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조경공사 적산기준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공사비를 과다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,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.(주의)